

관세법 상 실질과세원칙 입법화 방안 연구

실질과세원칙 적용의 한계를 중심으로

2024년 제40차 관세평가포럼

딜로이트 관세법인 이재욱
관세법인 커스앤 유상훈

CONTENTS

01. 개요

02. 관세법상 실질과세원칙 적용의 한계

03. 관세법상 입법화 방안

04. 입법안 관점에서의 판례 재검토

05. 입법안 한계에 대한 대응 방안

01 개요

1.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법원의 입장

2. 실질과세원칙 자체의 한계

| 실질과세원칙이란

세법의 해석 및 과세 요건의 검토·확인 은 조세 공평이 이루어지도록 실질에 따라야 한다는 세법 고유의 원칙

|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전/후 법원의 입장 차이

〈전원합의체판결 전〉	〈전원합의체판결 후〉
법적 실질 기반으로 당사자 거래 형식 존중	경제적 실질에 의한 거래 재구성을 인정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 하여야 하며, 조세회피 행위라 하여 행위 효력을 부인하려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야 ...	명義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

단, 전원합의체판결 이후에도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

01

개요

1.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법원의 입장

2. 실질과세원칙 자체의 한계

| 실질과세원칙과 관세법

- 관세법에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 지에서부터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어떤 한계점이 있는지 (2022두8442를 통해서 실질과세원칙이 관세법에 적용될 수 있음은 확인)

| 실질과세원칙의 본질적 한계

- 상호보완적 관계하에서 실질과세원칙의 확장에 따른 과세권 남용 문제
 - 적용범위 설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납세의무자 법적 안정성 침해 문제
- 개별사안마다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 -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문

02

관세법 상 실질과세원칙 적용의 한계

1. 입증책임에 비례하는 과세자료 확보의 한계

2. 관세법 상 실질과세원칙 적용 범위 설정의 어려움

02

관세법 상 실질과세원칙 적용의 한계

1. 입증책임에 비례하는 과세자료 확보의 한계

2. 관세법 상 실질과세원칙 적용 범위 설정의 어려움

| 입증 책임이란

소송에서 일방당사자가 법원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입게 되는 일방당사자의 불이익

|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간 입증책임 분배

과세표준, 과세산출의 합리적 근거 등의 과세요건에 관한 책임은 **과세관청**에게...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 입증책임은 **과세자료 확보**와 직결

02

관세법 상 실질과세원칙 적용의 한계

1. 입증책임에 비례하는 과세자료 확보의 한계

2. 관세법 상 실질과세원칙 적용 범위 설정의 어려움

| 과세자료 확보 어려움, "관세 특징이 한몫 한다"

- 관세는 외국물품의수입이라는 행위에대해부과
- 국제거래가필수적으로수반될 수밖에없음
- 국내당사자들뿐아니라외국소재당사자들 협조필요
 - 과세관청의과세처분 적법성증명더욱더어려움

| 과세자료확보와 관련된 지속적인 법령 개정



2024.01.23 한국세정신문

관세법 시행령 개정... 국세청 해외 현지법인 과세자료 관세청으로 간다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 지급보증용역거래명세서등



2024.02.20 관세청 행정예고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정한다

- 과세자료 제출 비협조자에 대한 거래가격부인등

02

관세법 상 실질과세원칙 적용의 한계

1. 입증책임에 비례하는 과세자료 확보의 한계

2. 관세법 상 실질과세원칙 적용 범위 설정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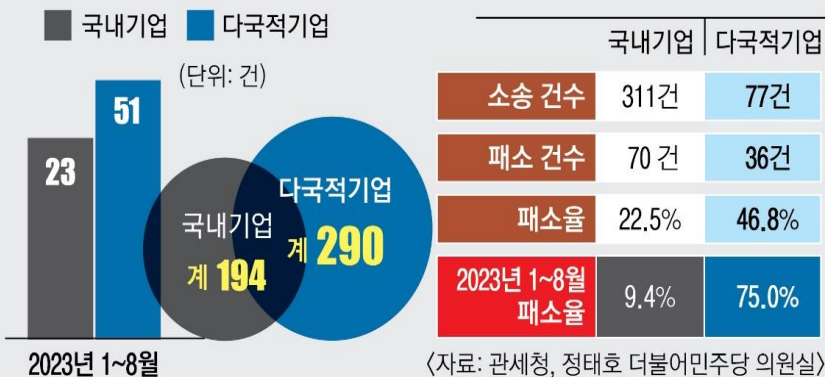
실질과세원칙 적용 사례 대부분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함

- 정밀한 Tax Planning을 통한 거래구조를 세팅하므로 다수의 당사자와 계약이 개입됨

조세 소송에서 과세 자료 대부분이 납세자의 생활영역 내에 있음

관세조사 자료제출 지연 및 거부 현황 국내 및 다국적기업 소송 현황

※2019년 1월~2023년 8월 기준



02

관세법 상 실질과세원칙 적용의 한계

1. 입증책임에 비례하는 과세자료 확보의 한계

2. 관세법 상 실질과세원칙 적용 범위 설정의 어려움

| '과세표준'과 '납세의무자'에 대한 관점 상이

과세표준과납세의무자에대한관점		
구분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상세	• 실제지급가격+가산요소—공제요소 • 과세표준 요소들이당초 경제적인실질을쫓고 있음 • 본질에따라판단하면되며, 실질과세원칙을굳이끌어와적용할필요성이적음 • 국제마케팅비용이권리사용료인지, 구매자의 자기계산비용인지여부는지급되는비용의본질적인성격에따라판단...	• 수입신고하는때의법률적소유권을보유한화주를납세의무자로확정한후, 실질과세원칙을적용하여결정된납세의무자와비교... • 조세회피목적등이있는 경우당사자가택한형식을부인하고과세할수있는지여부를판가름하는것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	제14조제1항
	“세법중과세표준의계산에관한규정은소득, 수익, 재산행위또는거래의명칭이나형식과관계없이그실질내용에따라적용한다.”	“과세의대상이되는소득, 수익, 재산행위또는거래의귀속이명의(名義)일뿐이고, 사실상귀속되는자га따로있을때에는사실상귀속되는자를납세의무자로하여세법을적용한다.”
	• 법문구상에서도본질자체가경제적실질이므로, 그에따라판단하도록기술	• 사실상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판단할때의 전제조건을 명시

과세관청이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처분을 할 때
과세표준의 계산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납세의무자 확정에 어려움 있을 수 있음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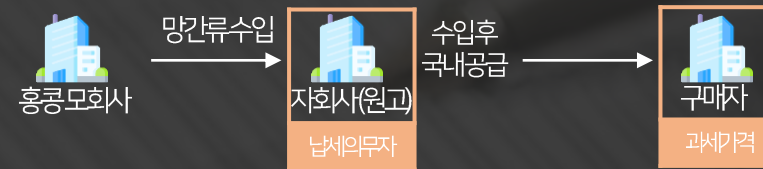
관세법 상 실질과세원칙 적용의 한계

1. 입증책임에 비례하는 과세자료 확보의 한계

2. 관세법 상 실질과세원칙 적용 범위 설정의 어려움

| '과세표준'과 '납세의무자'에 대한 관점 상이

2015두49320 사례 中



과세관청의 주장

구분	판단	근거
과세표준	국내구매자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비용	국내구매자가 실질적으로는 해외수출자로부터 직접 수입하였다고 보아함.
납세의무자	국내구매자가 아닌 원고	수입신고하는 때 수입물품의 법률적 소유권을 원고가 가지고 있음.

구매자와 납세의무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수입신고당시 법률적 소유권을 가진 당사자가 경제적 위험과 이익을 향유 가능성이 높게 됨

- 과세관청의 과세처분법성을 반증하기 용이해짐
(법률적인 소유권을 기반으로 경제적 거래상 위험에 따라 향유한 이익이나 손해를 설명)

03

관세법 상 입법화 방안

입법 시 고려 사항

1. 세법 상 혜택의 개념 명확화
2. 부당한 혜택의 개념 명확화
3. 조세 회피 의도에 대한 입증책임 분배

03

관세법 상 입법화 방안

입법 시 고려 사항

1. 세법 상 혜택의 개념 명확화

2. 부당한 혜택의 개념 명확화

3. 조세 회피 의도에 대한 입증책임 분배

| 거래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세법 상 혜택을 받았음이 전제

국세기본법 제14조 3항

-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이외에도

관세법 제4조에 따라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 등이 모두 합산된 혜택을 세법상의 혜택으로 규정할 필요...

세금의 부과와 징수뿐 아니라 비과세 혹은 감면 등에 따른 혜택도 포함되어야...

| 관련 내용 고려 시 입법 방안

“

”

관세법

제5조의2(실질과세)

- ① 이법에서 실질과세 원칙 적용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세법의 혜택”이란 수입물품에 부과·징수, 환급, 감면되는 관세와 내국세 등을 의미하며, 재산세, 상속세 등 수입물품과 관련되지 아니한 내국세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03

관세법 상 입법화 방안

입법 시 고려 사항

1. 세법 상 혜택의 개념 명확화

2. 부당한 혜택의 개념 명확화

3. 조세 회피 의도에 대한 입증책임 분배

| 부당한 혜택의 의미 및 구체적 범위 설정 필요

- 부당하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 그것을 누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 것인지...
- 부당한 혜택으로 추정하는 구체적인 혜택의 크기는...

<사전적 의미>

 부당하다

확대하기

부당하다 찾기 결과 (총 1 개)

부당-하다(不當하다) 「형용사」 이치에 맞지 아니하다. 전체 보기

<참고 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조세부담이 일정 비율 이상(50%)으로 현저하게 감소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혜택이라고 추정하며 납세의무 자간이에 대해 정당한 사업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다만, 우회거래금액이 10억원 이하이고 이에 따른 조세부담감소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부당한 조세 혜택이 아니라고 추정...

03

관세법 상 입법화 방안

입법 시 고려 사항

1. 세법 상 혜택의 개념 명확화

2. 부당한 혜택의 개념 명확화

3. 조세 회피 의도에 대한 입증책임 분배

I 부당한 혜택의 의미 및 구체적 범위 설정 필요

- 부당한 혜택은 "비율" 혹은 "절대적인 금액" 으로 모두 제시되어야...

<전체 수입 실적 대비 총 징수율을 반영하여 부당한 혜택의 크기 고려 가능>

기간	2020년	2021년	2022년
수입액	467,633	615,093	731,370
관세	7,058,540	8,227,000	10,324,118
부가세	36,318,742	45,827,795	61,080,164
기타 내국세	7,645,581	8,169,719	10,234,311
관세징수율	1.27	1.16	1.09
소계	43,964,324	53,997,514	71,314,475
징수세액합계	51,022,864	62,224,514	81,638,593
전체 수입액 대비 총 세액징수율	7.50%	7.72%	8.00%

단위: 백만 달러, 백만 원 %
출처: 관세청 무역통계 <https://trade.kita.net> 로인자 작성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 8%와 부가가치세 10%를 고려하여 **10.8%**를 그 비율로 설정하고, 이와 함께 **3억원**(특수관계자 과세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합산 금액인 1억원 + 2억원 = 3억원)을 부당한 혜택의 기준으로...

03

관세법 상 입법화 방안

입법 시 고려 사항

1. 세법 상 혜택의 개념 명확화

2. 부당한 혜택의 개념 명확화

3. 조세 회피 의도에 대한 입증책임 분배

부당한 혜택 추정 여부 따른 구분

구분	입증당사자	내용
부당한 혜택 추정	납세의무자	정당한 사업 목적성 등을 입증
부당한 혜택 추정 X	과세관청	기타 정황들을 통해 부당함을 입증

관련 내용 고려 시 입법 방안

//

//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실질과세)	제1조의4(실질과세 적용기준)
③ 제1항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 부당한 혜택 "이란 당사자가 택한 거래형식에 따라 부과되는 상기 ①의 혜택과 경제적 실질에 따라 부과된 혜택 차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 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업 목적성 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혜택을 반기 위해 거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① 법제5조의2제3항에서 "당사자가 택한 거래형식에 따라 부과되는 혜택과 경제적 실질에 따라 부과된 혜택의 차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이란 우회거래를 통해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 부담이 그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개선한 세법상 혜택의 10.8% 이상 혹은 3억원 이상 감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03

관세법 상 입법화 방안

입법 시 고려 사항

1. 세법 상 혜택의 개념 명확화

2. 부당한 혜택의 개념 명확화

3. 조세 회피 의도에 대한 입증책임 분배

|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낮출 필요...

- **납세의무자** : 경험칙에 비추어 **일반적 상관행에 부합되는 추정**의 사실을 제시하도록 ...
- **과세관청** : 납세의무자가 추정의 사실 입증할 시, 이에 대한 **반증을 들어다투도록** ...
 - 거래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조세회피가 유일한 목적인 경우는 드물 것이며 부당한 혜택과 연계되어 해석

| 관련 내용 고려 시 입법 방안

“

”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실질과세)	제1조의4(실질과세 적용기준)
④ 제1항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회피의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부담한다.	② 법제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란 납세의무자가 경험칙에 비추어 일반적 상관행에 부합되는 추정의 사실을 입증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 경우 과세관청이 이에 대한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납세의무자가 조세회피의도만을 위해 거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03

관세법 상 입법화 방안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실질과세)	제1조의4 (실질과세 적용 기준)
① 이법에서 실질과세원칙 적용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세법의혜택"이란 수입물품에 부과·징수, 환급, 감면되는 관세와 내국세 등을 의미하며, 재산세, 상속세 등 그 이외의 내국세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부당한혜택"이란, 당사자가 택한 거래형식에 따라 부과되는 상기 ②의 혜택과, 경제적 실질에 따라 부과된 혜택 차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업 목적성 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혜택을 받기 위해 거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회피의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부담한다.	① 법 제5조의2 제3항에서 "당사자가 택한 거래형식에 따라 부과되는 혜택과, 경제적 실질에 따라 부과된 혜택의 차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이란 우회거래를 통해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이 그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계산한 세법상 혜택의 10.8% 이상 혹은 3억원 이상 감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란, 납세의무자가 경험칙에 비추어 일반적인 상관행에 부합되는 추정의 사실을 입증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 경우 과세관청이 이에 대한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납세의무자가 조세회피의도만을 위해 거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04

입법안 관점에서의 판례 재검토

입법안 KEYWORD	세법상의혜택
	부당한혜택 추정여부
	조세회피의도

1. 선고 2015두49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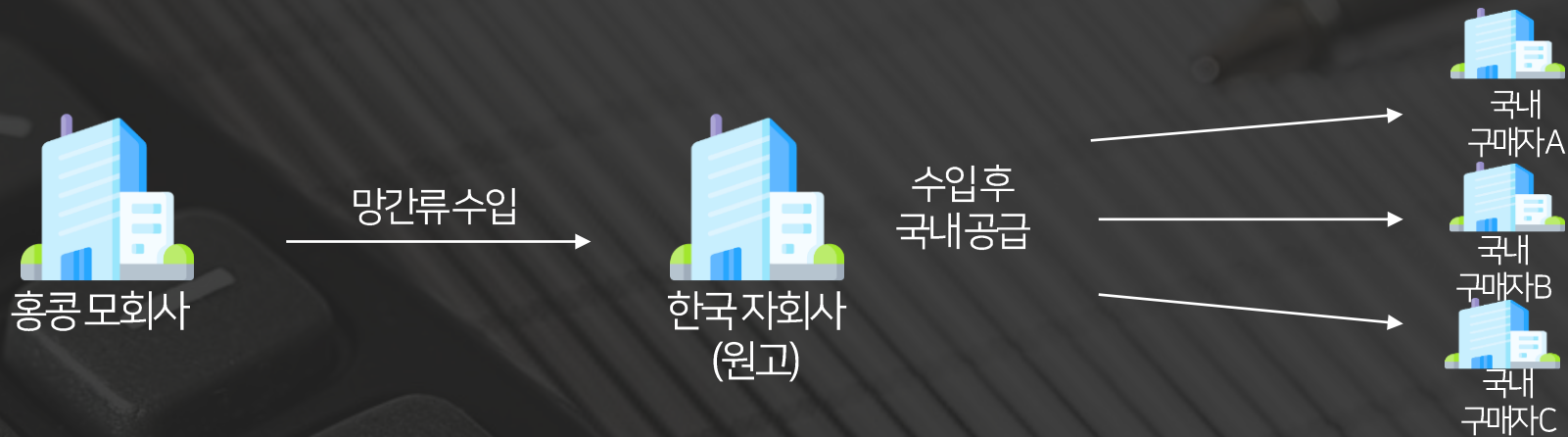
2. 선고 2014두8636

3. 선고 2014두2270

04

입법안 관점에서의 판례 재검토 (2015두49320)

| 사례개괄



“ 원고는 단지 홍콩 모회사의 판매대리인에 불과하며 거래의 실질 당사자는 홍콩 모회사와 국내 구매자이므로 국내 구매자가 지급한 금액이 실제지급금액임. ”

04

입법안 관점에서의 판례 재검토 (2015두49320)

당사자가택한거래



홍콩 모회사

망간류
수입



한국 자회사

수입자
납세의무자
실질구매자

수입후
국내공급

국내
구매자A
국내
구매자B
국내
구매자C

과세관청이재구성한거래



홍콩 모회사

망간류
수입



한국 자회사

수입자
판매대리인
납세의무자

수입후
국내공급

국내
구매자A
국내
구매자B
국내
구매자C

실질구매자

04

입법안 관점에서의 판례 재검토 (2015두49320)

| 입법안 관점에서의 재검토

기존 대법원 판단과 일치

- 부당한혜택이 아니라고 추정되었으며,
- 과세관청이 대상적격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당사자가 택한 법률 관계를 존중함

 대법원의 판단 근거	입법안 적용		판례 재검토 결과
	KEY-WORD	내용	
• 원고가 대금결제 및 손해배상 책임 등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지 않으나, 모회사와 자회사 간 통상적 거래 구조임 • 원고는 수입가격의 1% 내지 2% 이윤을 얻는 것에 그침 • 국내 구매자들과의 계약서 상에 물품 공급 의무와 그에 따른 위험 부담을 명시함 등	세법상 혜택	• 부과·징수, 환급, 감면되는 관세와 내국세 등 • 재산세, 상속세 등 그 이외의 고려	• 과세관청 처분 금액 약 22억원
	부당한 혜택	• 당사자가 택한 거래 vs 경제적 실질 거래 혜택 차이 비교 • 경제적 실질에 따른 세법상 혜택의 10.8% 이상 or 3억원 이상 감소 • 부당한 혜택 추정 여부에 따른 사업 목적성 등의 입증 책임 분배	• 부당한 혜택이 아니라고 추정 (3억원 이하) • 과세관청은 기타 정황들을 통해 부당한 혜택이라고 반증해야 함
	입증 책임	• 납세의무자가 일반적 상관관계에 부합되는 추정의 사실 입증해야 함. • 과세관청이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조세 회피의 도만을 위해 거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	• 부당한 혜택이 아니라고 추정된 상황에서 기타 정황들로 반증하지 못하였음 • 부당한 혜택 이외의 정황을 통해 조세 회피 의도 증명하지 못하였음

04

입법안 관점에서의 판례 재검토 (2014두8636)

| 사례개괄



과세관청

“ 국내 중간 업체는 수입품 중개업자에 불과하며 원고가 수입 물품에 대한 실제 화주
이므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해야 함 ”

04

입법안 관점에서의 판례 재검토 (2014두8636)



수입자
납세의무자
(실질구매자)

과세관청이재구성한거래

과세관청이재구성한거래

중국수출업체

중국수출업체

유기농콩
수입

국내중간업체

국내중간업체

수입품
중개업자

수입후
판매

원고

원고

납세의무자
실질구매자

콩수입가격저가신고

04

입법안 관점에서의 판례 재검토 (2014두8636)

| 입법안 관점에서의 재검토

기존 대법원 판단과 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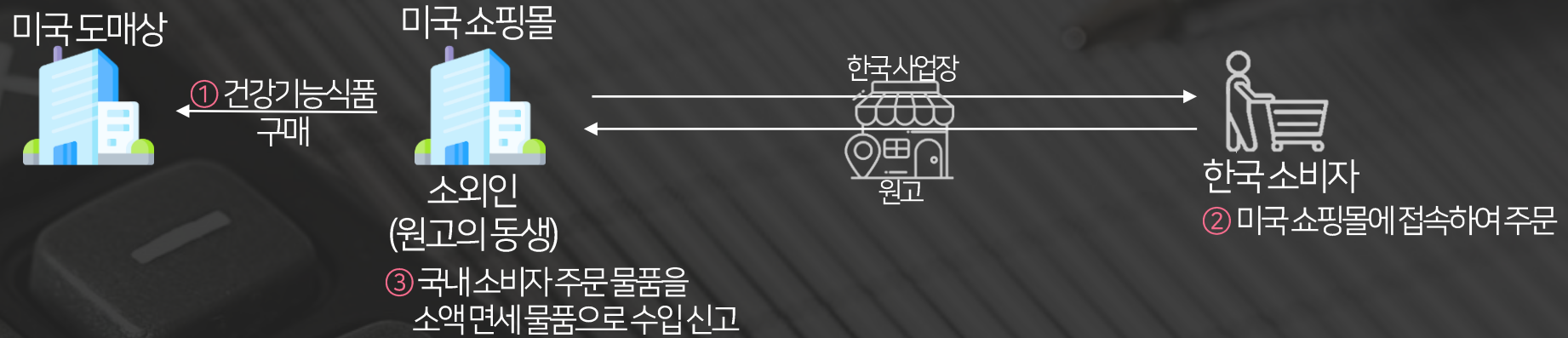
- **부당한혜택**으로 추정되었으나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업목적성 등을 입증하였음
- 원고가 저가신고를 공모하였다거나 조세회피를 위해 거래를 하였다고 증명되지 않는 한 **당사자가 택한 법률 형식은 존중**

 대법원의 판단 근거	입법안 적용		판례 재검토 결과
	판단 기준	내용	
• 수입물품의 소유권은 원고의 국내 공장에서 인도됨 (중간업체가 수입신고 당시 소유권 보유) • 중간업체는 원고와 계약 체결 이전부터 오랫동안 사업 영위해옴 • 원고 같은 회사가 농산물을 직접 수입하는 경우는 통상적이지 않으므로 노하우를 보유한 중간업체를 수입업체로 선정하는 것은 경영상 합리적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세법상 혜택	• 부과·징수, 환급, 감면되는 관세와 내국세 등 • 재산세, 상속세 등 그 이외는 고려 X	• 과세관청 처분금액 약 330억 원
	부당한 혜택	• 당사자가 택한 거래 vs 경제적 실질 거래 혜택 차이 비교 • 경제적 실질에 따른 세법상 혜택의 10.8% 이상 or 3억 원 이상 감소 • 부당한 혜택 추정 여부에 따른 사업목적성 등의 입증 책임 분배	• 부당한 혜택이라고 추정되어 납세의무자가 사업목적성 등을 입증해야 함 • 당사자들의 사업 영속 기간, 농산물 수입 구조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사업목적성 있다고 인정
	입증 책임	• 납세의무자가 일반적 상관행에 부합하는 추정의 사실 입증해야 함. • 과세관청이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조세회피의 도만을 위해 거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	• 사업목적성 등의 입증으로 상관행에 부합하는 추정 사실 입증됨 • 과세관청은 부당한 혜택 이외의 정황을 통해 조세회피의도 증명하지 못하였음

04

입법안 관점에서의 판례 재검토 (2014두2270)

| 사례개괄



과세관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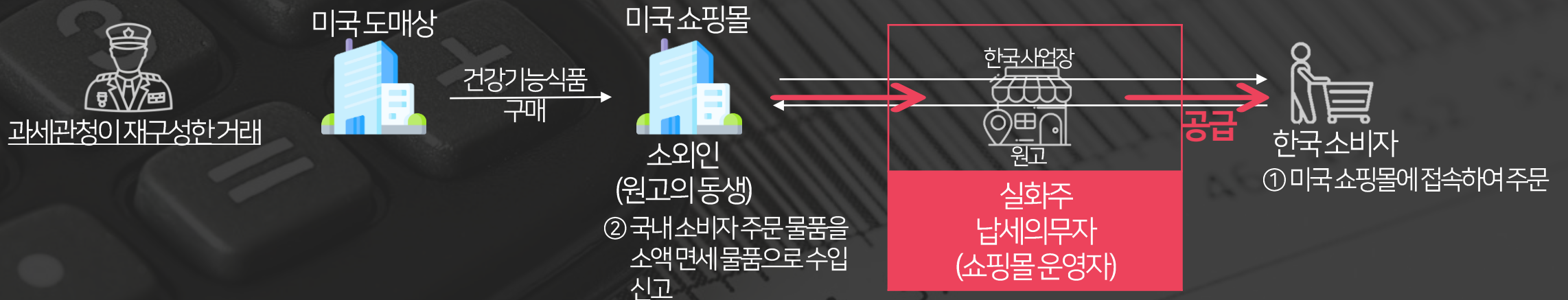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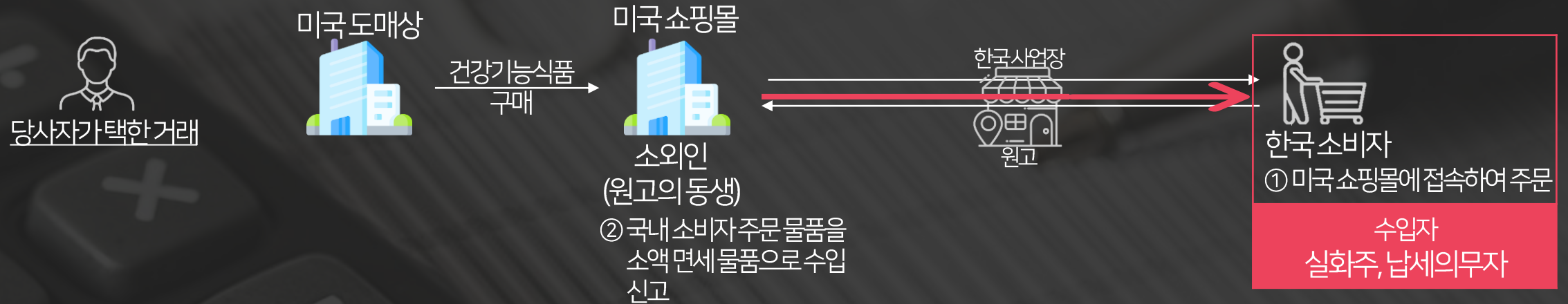
“

원고는 관세 등을 회피하기 위해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배송 받는 형태인 것처럼 가장하여 소액 면세를 받은 것

”

04

입법안 관점에서의 판례 재검토 (2014두2270)



04

입법안 관점에서의 판례 재검토 (2014두2270)

| 입법안 관점에서의 검토

기존 대법원 판단과 **불일치**

- 부당한혜택으로 추정되었으며, 납세의무자는 이에 대해 반증하지 못하였음
- 조세회피의도에 대해서도 납세의무자는 추정의 사실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사자가 택한 법률 형식 부인**

 대법원의 판단 근거	입법안 적용		판례 재검토 결과
	판단 기준	내용	
•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2단계 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이 입증되지 못하였음 • 일부 보조적 행위를 한국 내 사업자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택한 거래 형식 존중	세법상 혜택	• 부과·징수, 환급, 감면되는 관세와 내국세 등 • 재산세, 상속세 등 그 이외는 고려 X	• 과세관청 처분 금액 약 5억원
	부당한 혜택	• 당사자가 택한 거래 vs 경제적 실질 거래 혜택 차이 비교 • 경제적 실질에 따른 세법상 혜택의 10.8% 이상 or 3억원 이상 감소 • 부당한 혜택 추정 여부에 따른 사업목적성 등의 입증 책임 분배	• 부당한 혜택이라고 추정되어 납세의무자가 사업목적성 등을 입증해야 함 • 원고는 미흡한 과세자료 제출 등으로 충분한 입증이 행하지 않았음 (부당한 혜택 반증 X)
	입증 책임	• 납세의무자가 일반적 상관행에 부합되는 추정의 사실 입증해야 함 • 과세관청이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조세회피의도만을 위해 거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	• 부당한 혜택으로 추정된 이상 상관행에 부합하는 추정의 사실을 입증해야 하나, 충분히 입증하지 않았음 • 과세관청이 반증하기 이전에 납세의무자가 입증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조세회피의도를 가지고 거래한 것으로 추정

04

입법안 관점에서의 판례 재검토(소결)

| 입법안 관점에서의 재검토(소결)

기존판례	입법안 적용			판례 재검토 결과
	추징금액	부당한혜택추정여부	조세회피의도 입증책임	
2015두49320	22억원	X	• 부당한혜택이 아니라고 추정되었으며 과세관청이 반증하지 못함 • 과세관청은 기타정황들을 통해 조세회피의도 입증하지 못하였음 ➢ 조세회피의도만을 위해 거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 당사자가 택한 법률 관계를 존중 • 기존 대법원 판단과 일치
2014두8636	380억원	O	• 부당한혜택이라고 추정되었으나 납세의무자가 이를 반증함 • 과세관청은 기타정황들을 통해 조세회피의도 입증하지 못하였음 ➢ 조세회피의도만을 위해 거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 당사자가 택한 법률 관계를 존중 • 기존 대법원 판단과 일치
2014두2270	5억원	O	• 부당한혜택이라고 추정되었으나 납세의무자가 이를 반증하지 못함 • 납세의무자가 조세회피의도가 없다는 추정 사실을 입증하지 못함 ➢ 조세회피의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당사자가 택한 법률 관계를 부인 • 기존 대법원 판단과 불일치

05

입법안 한계에 대한 대응방안

납세자에 대한 보호 장치 구축

“

관세법 상 실질과세원칙의 입법화는 과세관청의 무
분별한 과세 근거로 작동할 수 있고 입증 책임의 분
배는 경우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가혹하게 작용할
수 있다...

”

1. 과세전적부 심사 활용 등

2. 별도의 자문 위원회 설립

3. 납세자 보호 관제도 활용

관세법상실질과세원칙입법화방안연구

실질과세원칙적용의한계를중심으로

“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안개로 둘러싸인 차터에서 미세한 불빛들에 의지하여
보행자들을 해하지 않고 조금씩 주행하는 것

그렇기에 헌법 아래 설립된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우리 세법에 이를 적용한다면 더욱 더 엄격하고 선명한 기준과
명확한 과세 자료가 기반되어야 할 것

”

Thank you

2024년 제40차 관세평가포럼

유상훈, 이재욱
